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년 12월부터 묘(苗)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 일정 시설을 갖추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육묘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육묘업 시설기준은 작물별 육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육묘 농가의 업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작물의 종류, 육묘 시기 및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5의2)

- 1) (제·개정 주요내용) 채소·화훼작물 육묘업의 시설기준 중 환경조절 장치로서 난방기는 등록기관인 시·군·구에서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재배지의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추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분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 파 작물의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2) (제·개정 사유) 일부 채소·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은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재배지역의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갖추

필요가 없는 시설임에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육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가에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육묘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육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소작물 중 양파·파의 묘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2)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난방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물의 종류 및 육묘 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u>것</u> 나. <생략>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table border="1" data-bbox="220 1176 788 1973"> <tr> <td data-bbox="220 1176 272 197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시설</td><td data-bbox="272 1176 788 1973">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추 <u>것</u>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추 <u>것</u>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 </td></tr> </table>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추 <u>것</u>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추 <u>것</u>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u>것. 다만, 채소작물 중 양파·파의 묘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u> 나.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table border="1" data-bbox="820 1176 1388 1973"> <tr> <td data-bbox="820 1176 873 197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시설</td><td data-bbox="873 1176 1388 1973">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추 <u>것. 다만, 난방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물의 종류 및 육묘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u>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추 <u>것</u>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 </td></tr> </table>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추 <u>것. 다만, 난방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물의 종류 및 육묘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u>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추 <u>것</u>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추 <u>것</u>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추 <u>것</u>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추 <u>것. 다만, 난방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물의 종류 및 육묘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u>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추 <u>것</u>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				

	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나. <생 략>	
	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나.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2479